



2015년 7월 17일

인사 - 일반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유엔사군정위):
유엔사군정위 및 유엔사군정위 자문단 위원 지명, 신임 및 참여

*본 규정은 1989년 9월 29일자 유엔사 규정 600-1을 대체한다.

사령관을 대리하여:

MARK C. DILLION
미 공군 소장
부참모장

//원본 서명//

김진호
대한민국 육군 중령
유엔사/연합사 부관참모

공식적으로:



GARRIE BARNES
출판 및 기록 관리처장

요약. 본 규정은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유엔사군정위) 대표들과 유엔사군정위 자문단 소속 위원들의 신임 및 임명과 관련된 방침과 절차를 수립한다.

변경사항 요약. 본 문건은 이전 규정을 갱신하는 것으로 본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적용. 본 규정은 모든 유엔사군정위 대표, 유엔사군정위 자문단 위원 및 유엔사 회원국 연락장교들에게 적용된다.

보충. 유엔사 본부, 군우 96205-5259의 사전 승인 없이 예하 사령부가 본 규정에 대한 추가 부록을 발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기록관리. 본 규정에 규정된 과정에 따라 작성된 기록은 미 육군 규정 25-400-2나 적용가능한 복무 규정에 따라 확인, 유지, 처분된다. 기록 제목 및 설명은 <https://www.arims.army.mil>의 미 기록 정보 관리 시스템 (ARIMS)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선방안 제안. 본 규정의 담당자는 유엔사군정위 비서처이다. 사용자는 국방성 문서양식 2028(규정 개선 사항 및 공백 양식)을 통해 의견이나 개선방안을 유엔사군정위 비서장 군우 96205-5259로 보낼 수 있다. 사용자는 유엔사군정위 비서처, 군우 96205-5259으로 미 국방성 양식 2028 (규정 개선 사항 및 공백 양식) 을 통해 개선 방안을 제안하거나 평을 발신할 수 있다.

배급. 전자 매체 한정(EMO).

목차

1. 목표
2. 참고 문헌
3. 약어 설명
4. 책임
5. 배경
6. 방침

별지

- A.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에 지원국
- B. 역사적 배경

용어

1. 목표

본 규정은 유엔군사령부 측 군사정전위원회(유엔사군정위) 대표들과 유엔사군정위 자문단 위원들의 지명, 신임 및 배정과 관련된 방침과 절차를 수립한다.

2. 참고 문헌

- a. 한국 정전협정, 1953년 7월 27일.
- b. 군사정전위원회의 잠정적 절차 규정에 관한 정전협정 후속합의서, 1953년 8월 8일.
- c. 유엔사 규정 600-2, 유엔사 편성 인원 신임.
- d. 유엔사 규정 551-4, 한국 정전협정 준수.

3. 약어 설명

본 규정에 사용된 약어는 용어 부분에 설명되어 있다.

4. 책임

- a. 유엔사군정위 수석대표는 소장급 장교로서 유엔사군정위를 대표하며 정전 업무와 관련해 사령관의 수석 자문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엔군 사령관이 임명한다.
- b. 유엔사군정위 비서장은 대령급 또는 준장급 장교로서 유엔사군정위 비서처를 대표하며 정전 업무와 관련해 사령관의 특별 보좌관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엔군 사령관이 임명한다. 유엔사군정위 비서장은 유엔사군정위의 인원 변동사항을 북한군과 중립국감독위원회에 통보한다.
- c. 유엔사군정위 비서처는 유엔사군정위의 실무 집행 기구로서 정전 관련 협의 및 정전 이행을 책임지며, 이를 위해 정전 준수 활동과 관련한 점검, 조사, 참관 및 부대 교육을 실시하고, 모든 비무장지대 출입 및 군사분계선 통과에 대한 승인 권한을 갖는다.

5. 배경

- a. 정전협정은 유엔군 사령관이 임명하는 대표 5명과 북한군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이 공동으로 임명하는 대표 5명, 총 10명의 고위급 장교로 구성된 군사정전위원회(군정위)를 설립하였다. 이에 따라 각측 군정위 대표 중 3명은 장성급 장교로, 기타 2명은 소장, 준장 또는 대령급 장교로 구성한다. 또한 각측은 고위급 장교 1명을 비서처의 장으로 임명한다.
- b. 1991년 전까지 유엔군 사령관은 미군 장성급 장교를 수석대표로 임명하였으나 1991년 이후로는 한국군 소장을 유엔사군정위 수석대표로 임명하였다. 한국군 소장의 수석대표 임명과 함께 유엔군 사령관은 미국, 한국 및 영국 대표를 군정위의 상임 대표로 임명하였고, 유엔사 회원국 소속 대령급 장교 1명을 순환대표로 임명하였다. 유엔군 사령관은 미군 장교를 유엔사군정위 비서장으로 계속 임명하고 있다.

6. 방침

a. 유엔사군정위 지명, 신입 및 참여.

(1) 수석대표: 한국 국방부는 유엔사군정위 수석대표직에 소장 1 명을 공식 지명한다. 지명된 장교는 통상적으로 한미 연합사 소속으로 연합사 부참모장직과 지상 구성군 사령부 참모장직을 겸한다.

(2) 미국대표: 주한미군은 유엔사군정위 차석대표, 유엔사-북한군 장성급 회담 유엔사 측 단장 및 유엔사군정위 미국대표직에 장성급 장교 1 명을 지명한다. 지명된 장교는 통상적으로 유엔사/주한미군 부참모장직을 겸한다.

(3) 한국대표: 한국 국방부는 유엔사군정위 한국대표직에 장성급 장교 1 명을 지명한다.

(4) 영국대표: 주한 영국 대사관은 한국에 상주하는 준장급 장교를 유엔사군정위 영국대표로 지명한다. 이 직책이 일시적으로 공석일 경우, 유엔군 사령관은 다른 장교를 임명하여 이를 충원한다.

(5) 순환대표: 대령급 장교를 유엔사 연락장교로 신입한 유엔사 회원국은 순환대표로 지명될 자격을 갖는다. 미국, 한국 및 영국은 유엔사군정위 상임 대표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 국가들은 순환대표로서 참여할 수 없다.

(6) 유엔사군정위 비서장: 주한미군은 유엔사군정위 비서처를 대표하는 비서장직에 대령급 또는 준장급 장교 1 명을 공식 지명한다.

(7) 신입: 유엔사군정위 비서처는 유엔사군정위 대표로 지명된 6 명에 대한 신입장과 임명장을 준비하여 유엔군 사령관의 서명을 받도록 한다. 유엔사군정위 비서처는 각 인원의 신입장 사본을 보관하고 군정위 통신선을 통해 북한군 측 군정위에 임명장을 제공한다. 유엔사군정위 비서장은 유엔사군정위 구성에 변동이 있을 시 중립국감독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8) 참여: 유엔사군정위 대표직을 맡은 인원들은 아래 열거된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a) 유엔사-북한군 장성급 회담.

(b) 유엔사군정위 자문단 회의.

b. 유엔사군정위 자문단 구성, 신입 및 참여.

(1) 유엔사군정위 수석대표, 차석대표 또는 비서장은 정전 업무에 대한 유엔사 자문 기구인 유엔사군정위 자문단 회의를 정기적으로 소집한다. 유엔사군정위 수석대표, 차석대표 및 비서장은 필요시 자문단 소속 위원들과 개별적으로 또는 단체로 협의한다.

(2) 유엔사군정위 자문단은 유엔사군정위가 임명한 위원들, 유엔사에서 신입한 유엔사 회원국의 연락장교(군인 및 민간인) 및 한국군 군정위 연락단장으로 구성된다. 기존 구성원이 유엔사군정위 자문단에 참석/참여할 수 없을 경우, 유엔사 연락장교로 추가로 신입된 각국

장교들이 유엔사군정위 자문단 부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한국군 군정위 연락단은 기존 구성원의 부재 시 자문단 위원 역할을 대행할 부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3) 유엔사군정위 자문단 위원 선임. 유엔사 연락단장 및 부연락장교의 선임장 사본 각 1 부를 유엔사군정위에 제공한다. 이 선임장은 유엔사군정위 자문단 선임의 근거가 된다. 유엔사군정위 비서처는 각국 자문단 위원 및 부위원의 선임장을 준비하여 유엔사군정위 수석대표의 서명을 받는다. 유엔사군정위 비서처는 선임장을 해당 인원에게 직접 발송하고 사본 1 부를 보관한다.

(4) 유엔사 연락장교단은 유엔사군정위 자문단의 임무에 따라 아래 열거된 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석 및/또는 참여해야 한다.

- (a) 유엔사군정위 자문단 회의.
- (b) 유엔사군정위-북한군 비서장 및 참모장교급 회담.
- (c) 정전협정 위반 또는 위반으로 추정되는 사건에 대한 유엔사군정위-북한군 공동감시소조 조사.
- (d) 정전협정 위반 또는 위반으로 추정되는 사건에 대한 유엔사군정위 특별 조사.
- (e) 유엔사 경계초소 및 관측소 점검.
- (f) H-128 “자격 비행” 임무.
- (g) 유엔사군정위-북한군 송환식.
- (h) 유엔사 6.25 전쟁 유해 송환식.

별지 A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 지원국

국가	A*	B*	C*	D*
호주	+	+	+	+
벨기에	+		+	+
캐나다	+	+	+	+
콜롬비아	+		+	+
덴마크			+	+
에티오피아	+			
프랑스	+	+	+	+
그리스	+		+	+
인도				
이탈리아	+	+	+	+
대한민국	+		+	+
룩셈부르크	+			
네덜란드	+		+	+
뉴질랜드	+	+	+	+
노르웨이			+	+
필리핀	+	+	+	+
남아프리카공화국	+	+	+	+
스웨덴				
태국	+	+	+	+
터키	+	+	+	+
영국	+	+	+	+
미국	+	+	+	+

- *비고:
- A - 전투병력 지원국.
 - B - 유엔군-일본 간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근거하여 일본 내 연락단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 미국은 미-일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에 따라 이 자격을 갖춤.
 - C - 현 유엔사 연락단 유지국.
 - D - 현 유엔사군정위 자문단 참여국.

별지 B
역사적 배경

B-1. 유엔군 사령관은 1953년 7월 27일 한국 정전협정에 서명하기 직전, 중위 이상 대령 이하 계급의 장교 1명을 유엔사군정위 자문단 위원으로 임명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와 유엔 회원국 중 미국을 비롯한 유엔사 전투병력 파병국들의 선임 연락장교에게 요청하였음.

B-2. 유엔사군정위 자문단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래 활발한 활동을 지속해옴. 자문단은 현재 유엔사 회원국 전체 18개국의 대표들로 구성됨.

용어
약어

CFC	Combined Forces Command	연합군사령부
DCS	Deputy Chief of Staff	부참모장
KPA	Korean People's Army	북한군
LNO	Liaison Officer	연락장교
MAC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군사정전위원회
MND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국방부
ROK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
UNC	United Nations Command	유엔군사령부
UNCMAC	United Nations Command component of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유엔군사령부 측 군사정전위원회
UK	United Kingdom	영국
U.S.	United States	미국
USFK	United States Forces Korea	주한미군